
입 법 정 보

2020-1호



목 차



1.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	4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	4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5
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	6
5.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	7
6.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7
7.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기획재정부)	8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9
9.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9
1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10
11.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1
13.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11
14.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
15.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13
16.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 (소방청) ..	13
17.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4
18.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6
19.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	16
20. 산림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17
2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8
22.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19
2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	19
2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	20
25.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20

2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	21
27.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2
28.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3
29.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24
30.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	24
3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	25
3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26
33.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26
34.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27
3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	28
3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	29
37.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	29

정부입법 예고

1.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

- 예고일자 : 2020. 1. 2.
- 마감일자 : 2020. 2. 11.
-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에 한하여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신고의 시기도 외부강의등을 마친 후 사후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 됨에 따라 관련 행위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외부강의등의 신고 규정 개선(안 제14조)
 - 1) 의원이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 사례금 수수 여부와 무관히 신고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에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만 신고하도록 변경하고, 신고의 시기도 현재의 사전 신고 방식에서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후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변경함
 - 2) 신고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이 해당 의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

- 예고일자 : 2020. 1. 2.
- 마감일자 : 2020. 2. 11.
-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에 한하여 사후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 19. 11. 26. 공포, ' 20. 5. 27.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이첩 송부 사건에 대한 조사기관의 신고 처리기간 규정, 과태료 부과 통보 대상자에 대한 사실 통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첩 송부사건에 대한 조사기관의 신고 처리기간 규정(안 제13조, 제34조)

1)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로부터 이첩 또는 송부받은 신고를 처리하는 조사기관은 60일 이내에 처리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하도록 규정

나. 소속기관장이 인도받은 금품등의 기관별 처리 근거 마련(안 제24조 제5항)

1) 멸실 부패 우려, 제공자 부지 등의 이유로 공공기관장이 소속 공직자등으로부터 인도받은 금품등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다. 외부강의등의 신고 사항 및 신고 방법 개선(안 제26조)

1)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 사례금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에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에 한하여 사후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신고사항 중 사례금 총액 및 상세명세는 ‘사례금을 받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괄호 부분(제1항제4호)을 삭제

라. 과태료 부과 통보 대상자에 대한 사실 통지(안 제45조)

1) 소속기관장이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그 위반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대상자 및 그 소속 공공기관에 통지하도록 규정함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20. 1. 2.
- 마감일자 : 2020. 2. 11.

○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여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 19.12.16)을 이행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투기과열지구 3억원 →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원, 非규제지역 6억원),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의 내용으로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안 제3조제6항)

1) 조정대상지역 3억원 및 非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토록 규정함

나.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안 제3조제6항)

1)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규정함

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20. 1. 6.

• 마감일자 : 2020. 2. 17.

○ 현대의 급격한 사회 경제의 변화에 발맞추어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임대차에 관한 법제 역시 부동산 정책과 연계하여 탄력적으로 대응될 필요성이 있음. 이를 위해 법제 개선에 임대차 시장 상황의 정확한 판단 및 관련 통계 분석 등이 수반되어야 하는 바, 법무부는 부동산 정책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및 이와 관련된 주요업무를 공동으로 관할하도록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 제14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에 상가건물 임대차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2조 제1항, 제14조제3항, 제14조의2 및 제22조)

나. 표준권리금계약서 및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서식을 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10조의6 및 제19조)

다.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 설치하도록 함(안 제20조제1항)

5.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20. 1. 6.

• 마감일자 : 2020. 2. 17.

- 현대의 급격한 사회 경제의 변화에 발맞추어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임대차에 관한 법제 역시 부동산 정책과 연계하여 탄력적으로 대응될 필요성이 있음. 이를 위해 법제 개선에 임대차 시장 상황의 정확한 판단 및 관련 통계 분석 등이 수반되어야 하는 바, 법무부는 부동산 정책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이와 관련된 주요 업무를 공동으로 관할하도록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 설치하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제16조제1항제2항 및 제21조제1항)
 - 나.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서식을 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30조)

6.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20. 1. 6.

• 마감일자 : 2020. 1. 16.

- 소비자의 다양한 선호 및 기술발전 등에 따라 출현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류 제조방법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주류의 범위를 확대하고, 주류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류에 사용가능한 첨가재료를 추가하며, 주류제조장 시설기준을 충족하기 힘든 경우에도 시음행사를 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요건이 면제되는 주류면허 대상에 시음행사를 추가하고,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전통주 업계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전통주 통신판매 시 과세표준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주류의 범위를 확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주류제조기트를 주류로 인정하며 이 경우 주류 원료가 발효 과정을 거쳐 제조된 최종제품의 수량 및 알코올분도 검정할 수 있도록 함

- 나. 주류에 사용가능한 첨가재료에 오크칩과 알룰로오스를 추가함
- 다. 시설기준 요건이 면제되는 주류 제조면허 대상에 시음행사를 추가함
- 라. 기타주류로 분류되어 있는 유사탁주를 특정주류도매업자가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함
- 마. 의제주류판매업자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시 판매장 이전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함
- 바. 전통주를 통신판매 방식으로 판매 시 통상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인정함
- 사. 맥주와 탁주의 과세표준이 가격에서 수량으로 전환됨에 따라 소규모주류제조자 등이 제조하는 맥주와 탁주의 과세표준 경감 대상을 가격에서 수량으로 변경함
- 아. 「주세법」 제40조에 따른 주세보전 명령의 제정 및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인 국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제도를 개선함
- 자. 과실즙 등을 제외한 과실을 사용하여 과실주를 제조하는 경우에 소규모 과실주제조면허를 발급하도록 함

7.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20. 1. 6.
- 마감일자 : 2020. 1. 28.
- 농어민등이 농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 받은 경우 추정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의 합리화를 위하여 가산액 산정기준을 정비하고, 어민의 영어비용 절감을 지원하기 위하여 면세유 공급대상인 자가 어획물 운반선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며, 임업인의 납세협력의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면세유 관련 신고서에 대한 확인·날인 권한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한 면세유 관련 의무 불이행시 제재 예외사유 및 관련 절차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영농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정 환급받은 자에게 추정

하는 이자상당가산액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1일 0.03%에서 0.025%로 인하하고, 기산일을 환급받은 날에서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로 조정함.

- 나. 면세유 공급대상인 자가 어획물 운반선의 범위에 「어선법」 제3조의 어선설비를 추가함.
- 다. 임업인의 면세유 관련 신고서에 확인·날인할 수 있는 자에 산림조합장을 추가함.
- 라. 법률에 따라 면세유 사용이 금지되는 경우에 맞춰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의 교부 또는 사용을 중지하도록 하는 사유를 정비함.
- 마. 법률에서 위임한 면세유 사용금지 예외사유로 재해·도난, 질병·중상해 등을 규정하고, 예외사유가 확인된 농어민등이 신고 등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면세유 사용을 허용하도록 함.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20. 1. 6.
- 마감일자 : 2020. 1. 28.
-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업종변경을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자산을 처분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업종 변경에 따른 자산의 대체 취득한 경우를 추가하며, 공익법인 의무지출제도 적용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공익법인 의무지출제도 적용대상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최대 20년의 연부연납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요건을 정하고, 국세물납제도에 대한 물납재산별 불허요건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9.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20. 1. 6.
- 마감일자 : 2020. 1. 28.
- 국내 투자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및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관세 감면을 적용 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고, 연구 개발 촉진을 위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나. 연구 및 인력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 감면을 적용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1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20. 1. 6. • 마감일자 : 2020. 2. 17.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시행(' 19.12.16)에 따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공기업 참여와 공공임대 공급,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을 통해 공공성을 갖춘 경우 사업시행면적을 확대·적용하고,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도 조례나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가로구역 확대 허용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구역 면적 확대(안 제3조제1항제2호가목)
 - 1) LH 등 공기업이 참여하고, 공공임대주택 10% 이상 공급, 지구단위 계획수립 등 공공성 요건 충족시 사업시행구역 확대(1만㎡→2만㎡)
- 나. 투기과열지구 대상 가로구역 면적 제한규정 삭제(안 제3조제2항)
 - 1) 공공성을 확보한 경우, 사업시행구역 확대(1만→2만㎡) 적용을 위해서는 가로구역 확대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투기과열지구도 가로구역 면적 확대 허용
- 다.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관련 조항 추가(안 제3조제3항 및 제27조제14호 신설)
 - 1) 1만㎡ 이상의 사업시행구역에 대한 공공성 확보 요건으로 지구 단위계획 수립·변경이 필요함에 따라 동의 요건 등 관련 조항 신설

11.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20. 1. 7.
- 마감일자 : 2020. 2. 17.
- 배출자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업무를 대행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처벌규정 신설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 주요내용
 - 가.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 5)
 - 1) 배출자의 건설폐기물 인계 인수 내용을 타인이 대행입력할 경우 처분 기준 필요
 - 2) 배출자의 건설폐기물 인계 인수 내용을 건설기술용역 수행자가 아닌 자에게 올바른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한 배출자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처분기준 마련
 - 3) 대행입력 처분으로 건설폐기물 적정 처리 도모

13.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20. 1. 7.
- 마감일자 : 2020. 2. 17.
- 민원 처리기한 단축이 가능한 사무에 대해 개선하여 민원편의성을 도모하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업체에서 새로 발생한 폐기물을 실적보고토록 하며, 전자인계서 입력대행 처리업자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개선
- 주요내용
 - 가. 건설폐기물 처리실적보고 증빙 보완(안 제27조)
 - 1) 건설폐기물출 및 처리실적보고 시 보고서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 적정 처리 유무를 파악하기가 어려움
 - 2) 건설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 시 그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토록 제도 개선
 - 3) 건설폐기물배출 및 처리현황을 보다 정확하고 투명하게 관리될 것으로 기대됨.
 - 나. 전자인계서 입력대행 처리업자 행정처분기준 마련(안 별표3)
 - 1)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전자인계서 입력 대행 시 행정처분 기준이 없음
 - 2)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전자인계서 입력 대행 시행정처분 기준 신설

3) 건설폐기물배출 및 처리현황을 보다 정확하고 투명하게 관리될 것으로 기대됨.

다. 단순 검토사항 민원 처리기한 단축(별지 제10호, 제11호의2, 제14조 서식)

1) 사무별 민원 처리기한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어 단순 검토사항도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점 발생

2)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의 수집 운반 대상 건설폐기물 변경, 수집 운반차량 증차, 건설폐기물 처리업 상호 변경,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상호 변경에 대해서는 민원 처리기한을 단축

3) 민원 처리기한 단축으로 민원 편의성 도모

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보고 시 중간처리 후 발생 폐기물 처리 내역 포함(별지 제30호 서식)

1)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중간처리를 하면서 발생한 폐기물이 통계로 잡히지 않는 문제 발생

2) 건설폐기물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실적보고 시 제출토록 개선

3)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통계관리로 중간처리과정에서 순환골재 회수율 산정이 가능

14.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20. 1. 7.

• 마감일자 : 2020. 2. 6

○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에 더하여 소방직 국가직화에 따른 소방공무원 인건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인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상위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서 하위 법령인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에 “소방인력 운용”을 추가하여 소방공무원 인건비에도 사용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4제2항)

나. 교부기준에 “소방인력 운용”을 추가하여 인건비 지원 시 소방공무원 충원현황을 기준으로 교부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4제3항)

다. 소방분야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을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 및 안전분야 사용금액의 100분의 75 이상” 으로 명확히 함(안 부칙 제 26328호, 제2조 개정)

15.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20. 1. 7.

• 마감일자 : 2020. 2. 6

○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하여 관련 법률이 개정(시행 : 2020.4.1.)됨에 따라 그 입법취지에 따라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정원 관리를 위하여 관련조항의 삭제와 직급기준등의 계급을 국가직으로 변경하는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 설치(안 제6조)

1) 소방기본법(제3조제4항)의 개정에 따라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나. 소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관련 조항 정비(안 제27조, 제30조, 별표2, 별표6, 별표7)

1) 지자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규정을 제정함에 따라 현행규정의 정원 관련 조항을 삭제함.

2) 소방공무원법(제15조)의 개정으로 근속승진 관련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함.

3) 소방본부장·과장의 직급기준의 계급을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변경함.

16.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 (안) (소방청)

• 예고일자 : 2020. 1. 7.

• 마감일자 : 2020. 2. 17.

○ 지방소방공무원을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전환하고, 시·도에 국가소방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소방기본법」이 개정(2020. 4. 1. 시행)됨에 따

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도별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규정하고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을 제외한 시·도별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규정함(안 제2조)
- 나. 시·도지사는 매년 6월 말까지 계급별·하부조직별 정원을 시·도 조례로 규정하도록 함(안 제3조)
- 다. 시·도지사는 정원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 정원의 2퍼센트 이내에서 증감하여 조례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라. 소방청장은 시·도별 소방공무원의 인력 운영현황을 공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17.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20. 1. 8. • 마감일자 : 2020. 2. 17.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19.12.3.)됨에 따라 개정법률안과 관련된 시행령 조문 및 그간의 입법미비사항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운영 내실화 (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
 - 1) 국가기록관리위원회 부위원장 신설, 당연직 위원의 구성 변경 등 법률 제15조가 개정됨에 따라 부위원장의 직무(위원장 직무대행)를 신설하고, 당연직 위원의 대리출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간사를 각각 전문위원장, 특별위원장으로 개정함
- 나. 주요기록물 생산 관리 대상 정비 (안 제17조)
 - 1) 법률 제17조에서 조사 연구서 또는 검토서를 작성하도록 한 규정이 조사 연구 또는 검토한 내용 및 결과를 기록물로 생산하도록

- 록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상 조문도 “조사 연구 또는 검토한 내용 및 결과를 기록물로 생산하여 등록 관리” 하도록 개정함
- 다. 이관 완료 전자기록물 사본 삭제 규정 정비 (안 제35조, 제44조)
- 1) 처리과 및 기록관에서 인수완료 결과를 통보받은 전자기록물 사본을 “물리적으로 복구 불가능하도록 삭제 또는 파기”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전자기록물을 삭제하여야 하며, 복구하지 아니한다” 고 조문을 개정하고, 처리과에서의 전자기록물 사본 활용에 관한 단서 규정을 삭제함
- 라. 전자기록물 기술정보 관리 방안 마련 (안 제36조의2 신설, 제46조)
- 1) 전자기록물 기술정보 수집 활용에 관한 규정이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전자기록물의 파일포맷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정보 관리 서식을 신설하여 공공기관에 해당 내용을 관리토록 하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 서식을 제출토록 하는 등 기술정보 관리에 관한 세부 규정을 신설함
- 마. 기록물 폐기금지 제도 세부절차 마련 (안 제54조의2 신설)
- 1) 법률 제27조의3에 기록물의 폐기금지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기록물의 폐기금지 대상, 폐기금지 통보 및 해제 절차 방식, 폐기금지 기록물의 관리 방안 등 세부 규정을 신설함
- 바. 기록물관리 실태점검 후속조치 이행절차 마련 (안 제64조)
- 1) 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요청에 관한 규정이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법 제19조 제7항, 제8항)되고, 시행조치 이행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실태점검 관련 자료제출 의무 부과, 시정조치 결과 통보 등 후속 이행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사. 비밀기록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정비 (안 제68조)
- 1)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하는 비밀기록물의 범위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있어 “예고문에 의하여 비밀 보호기간이 만료된 기록물”을 “보안상 이유로 일반문서로 재분류할 수 없는 경우”로 명확히 규정하고, 해당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규정을 신설함
- 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 취득 규정 보완 (안 제78조 관련 부칙 신설)
- 1)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 시험 및 자격증 발급 제도 도입

명확히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건강기능식품에도 고카페인 주의표시 등 적용(안 별표 2)

- 1) 일반 식품은 고카페인 함유인 경우 주의표시 등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강기능식품에는 주의표시 등 의무가 미흡
- 2) 고카페인 건강기능식품에도 식품·축산물과 동일하게 카페인 함량 및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 섭취에 대한 주의문구’를 표시하도록 함
- 3) 건강기능식품에도 고카페인 표시 및 주의문구 표시를 표시토록 하여 소비자 안전정보 제공 강화

나. 1일 영양성분 기준치 개선(안 별표 5)

- 1) 식품 영양표시의 기준이 되는 현행 1일 영양성분 기준치는 만 2세 이하의 영유아에게 맞는 영양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움
- 2) 만 2세 이하의 유아에 대한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별도로 마련하고, 1일 영양성분 기준에 없는 영양성분에 대한 기준은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의 해당 연령 기준치를 따르도록 함
- 3) 유아 섭취 대상 식품에 대한 올바른 영양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올바른 식품 선택에 기여할 수 있음

다. 행정처분 기준의 명확화(안 별표 7)

- 1) 유통기한 대신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할 수 있는 식품에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변조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 2)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지 않거나 변조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함
- 3) 정확한 품질유지기한 표시를 유도하고 일관성 있는 행정처분 기준 적용 가능

20. 산림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 예고일자 : 2020. 1. 8.
- 마감일자 : 2020. 2. 17.

○ 산림기본계획 및 연차보고서의 공표 등의 내용으로 「산림기본법」이

개정(' 19.12. 3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산림기본계획 및 연차보고서의 공표 방법을 정하고,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설립 근거였던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산림협력에 관한 협정」이 만료되고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설립에 관한 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함임.

○ 주요내용

가. 산림기본계획 및 연차보고서의 공표 방법 규정(안 제6조의2)

- 1) 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산림기본계획, 법 제12조에 따라 작성한 연차보고서를 산림청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규정

나. 국제기구 등의 범위 중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설립 근거 현행화(안 제13조)

- 1)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설립 추진 근거를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산림협력에 관한 협정」에서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설립에 관한 협정」으로 변경

2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20. 1. 8.
- 마감일자 : 2020. 1. 21.

- 건설산업의 혁신을 위하여 건설공사 시공자격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6136호, 2018. 12. 31.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이 법이 원활히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이 법 시행 전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중 지정한 공사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범사업 적용을 위한 공공기관 범위 규정 (부칙 제2조)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22.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20. 1. 8.
- 마감일자 : 2020. 1. 28.
- 민간이 스마트도시 조성·운영 과정에서 규제 제약 없이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를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규제혁신지구를 지정하고 스마트혁신사업 및 스마트실증사업의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631호, 2019. 11. 26. 공포, 2020. 2. 27. 및 5. 27. 시행)됨에 따라, 해당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준·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위원장 : 국토부장관) 위원 추가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스마트규제혁신지구 및 스마트혁신사업·스마트실증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 기준, 관계기관의 장 및 사업자의 의무사항 등 신설(안 제8장 제46조부터 제54조 신설)
 - 나. 민간기업등이 제안할 수 있는 사업으로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의 실증 및 제공을 추가(안 제14조)
 - 다.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추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지원하는 전문위원회의 분야를 현행 스마트도시 정책에 맞게 개편(안 제25조 및 제27조)

2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 예고일자 : 2020. 1. 9.
- 마감일자 : 2020. 2. 18.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16523호, 2019.8.20. 공포, 2020.2.21 시행)됨에 따라 소상공인 용자 대출금의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의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고, 부실채권의 매각기관을 추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채무자 무자력 상태, 채무자의 미래 상환 능력 증가 가능성 인정 등의 경우에 소상공인 융자대출금의 상환 기간 연장, 상환 유예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이사회결절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함(안 제10조의2)

나. 부실채권을 매각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자산유통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를 추가함(안 제10조의3)

2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 예고일자 : 2020. 1. 9.

● 마감일자 : 2020. 2. 19.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523호, 2019.8.20. 공포, 2020.2.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소상공인 융자 대출금의 부실채권 상각 또는 매각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 융자 대출금의 부실채권 상각 또는 매각 절차 규정
(안 제1조의3)

1) 채무자의 폐업, 파산, 강제집행, 행방불명, 사망 등의 사유로 회수불가 채권, 소멸시효 완성 또는 완성될 채권, 회생계획인가 결정 또는 법원면책 결정에 따른 회수불능 채권, 회수 실익이 없는 채권을 부실채권으로 규정함

2) 부실채권의 상각, 매각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이사회 의결을 통해 결정하고 상각, 매각의 계획 및 처리결과를 중소기업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함

25.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 예고일자 : 2020. 1. 9.

● 마감일자 : 2020. 2. 18.

○ 올림픽대회, 아시아경기대회 등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국제경기대회 외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로서 정부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한 국제경기대회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위임하

고 있는바, 그 지원 대상 국제경기대회에 국제마스터스대회협회가 주관하는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를 추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를 국제경기대회로 추가(안 제1조의2 제4호 신설)

2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 예고일자 : 2020. 1. 9.

● 마감일자 : 2020. 2. 18.

○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19.12 월)」의 후속조치로서 금융투자상품 판매 등에 관한 투자자 보호제도 개선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고난도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정의(안 제3조의3)

1)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고 가격결정의 방식이나 손익의 구조를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투자상품을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 정의

나. 설명의무 이행방식 제한(안 제53조)

1)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위험 등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서명, 기명날인, 녹취만 인정하고 E-mail, 우편, ARS 방식은 제외

다. 금융투자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강화(안 제68조, 제99조, 제109조)

1) 판매과정 녹취, 숙려기간 부여 등 고령투자자 부적합투자자 대상 금융투자상품 판매규제 및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판매규제를 강화하고, OEM펀드 관련 펀드 판매회사에 대한 제재근거 마련

라. 특정금전신탁 운용방법 변경시 투자자 보호 강화(안 제104조)

1) 특정금전신탁 운용방법 변경시 위험도가 변경되지 않더라도 운용대상 종류를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 변경하는 경우 위탁자가 자필로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하고, 운용방법 변경시 변경되는 운용방법에 따라 취득하는 자산에 대하여 적합성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부당권유 금지 원칙 적용

마.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일괄신고서 제출 제한(안 제121조)

- 1)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파생결합증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일괄 신고를 통한 증권발행을 제한

바. 동일증권 판단기준 명확화(안 129조의2)

- 1) 증권이 기초자산 또는 운용대상자산이 별도로 있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의 동일성 판단기준을 명시하고, 동일증권 판단기준은 증권을 실질적으로 모집 또는 매출하는 자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

사.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 강화(안 제271조)

- 1)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적격투자자 요건으로서 최소 투자금액을 기존 1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레버리지 200% 이상 펀드는 기존 3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상향

27.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예고일자 : 2020. 1. 9.

• 마감일자 : 2020. 2. 18.

- 불법 전화번호 역무 제공 중지 등 집행 행정행위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장관 권한 일부(불법 전화번호 중지 명령권, 통신설비 현장조사권 등)를 집행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하고자 시행령 제65조(위임규정)를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화번호에 대한 역무 제공 중지 명령권(법 제32조의3)

- 1) 불법대부업,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된 불법 전화번호에 대해 관계기관장(지자체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금감원장)이 요청하면 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역무 제공 중지를 명령하는 경우로, 단순 반복적으로 집행되는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

나. 전기통신설비 관련, 전기통신사업자의 여유 설비 등 현장조사권(법 제35조), 설비 설치를 위한 식물제거 허가권(제75조), 통신정책 수립을 위한 설비 검사 및 위법 설비 제거명령권(제82조)

- 1) 업무 특성상 전국의 전기통신설비 설치현장 방문 등이 요구되므

로 지역 분소 및 점검인력을 보유한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

28.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예고일자 : 2020. 1. 10. ● 마감일자 : 2020. 2. 6.
- 중 대형 전통신장 개별점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전기사업법이 개정 (법률 제16480호, 2019.8.20.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전통신장 전기안전점검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전통신장 안전점검업무 수행을 위해 시기·절차 등 신설(안 제38조의2 신설)
 - 1) (시기) 전통신장 점포의 전기설비에 대해 매년 실시
 - 2) (절차) 부적사항 통지(소유자 또는 점유자) → 개수확인점검 (2개월이내) → 확인점검 부적합 시 시장·군수 등에게 통보 → 개선명령(시장·군수 등) 실시 → 개선명령 이행여부 확인 (안전공사)
 - 나. 전통신장 안전점검 결과 등 안전정보 기록·보존(안 제38조의3 제2항 신설)
 - 1) 전통신장 전기설비의 체계적인 이력관리를 위해 전기안전공사는 소유자 성명 및 주소, 점검일, 점검결과 등 점검 내용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
 - 다. 전기안전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지자체에 요청 (안 제38조의4 신설)
 - 1) 효율적 점검을 위해 안전공사는 점검에 필요한 기초자료(전통신장 점포현황, 구획도 등)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요청
 - 라. 전기안전관련 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할 사항 확대(안 별표17 및 서식 제49호)
 - 1) 전기안전관리 정책 수립 및 실태 파악 등을 위해 안전공사가 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할 대상에 전통신장 점검결과 포함

29.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20. 1. 10. • 마감일자 : 2020. 2. 19.
- 겨울철 주요 화재원인인 화목(火木)보일러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관계자의 인식제고 및 부실시공 방지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가스사용량이 20만kcal/h를 초과하나 규제를 받지 않고 있던 캐스케이드식 보일러를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검사대상기기에 포함시켜 규제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정기통계품질진단결과를 반영하여 에너지사용량 신고서식을 변경하는 등 열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강화 및 통계서식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소형 온수보일러에 포함되어 있던 ‘가정용 화목보일러’를 열사용기자재에 별도구분(별표1)하고, ‘특정열사용기자재’에 추가(별표3의2)
 - 나. 캐스케이드식 보일러를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열사용기자재(별표1), 특정열사용기자재(별표3의2), 검사대상기기(별표3의3) 및 검사면제대상(별표3의6)에 포함
 - 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에너지사용량 신고와 관련한 별지8호 서식에 기업분류 및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코드 기입란을 추가하고, 주요 에너지사용설비를 고정·이동·신재생설비·ESS(에너지저장장치)설비로 세분화(별지8)

30.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 예고일자 : 2020. 1. 10. • 마감일자 : 2020. 2. 21.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위임된 처방전 등의 서식, 발급절차, 기재사항 등, 나무의사 보수교육기관 지정기준, 보수교육의 내용·시간·주기, 산불예방 행위 제한기간 등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진료부, 처방전 등의 서식, 기재사항, 보존기간, 발급절차 등(안 제19조의8, 별지 제10의16호 및 제10의17호) : 나무의사가 수목진

료를 할 경우 진료부, 처방전 등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을 비롯하여 서식, 보존기간, 발급절차 등을 마련함

나. 나무의사 보수교육의 유예증명(안 제19조의9): 산림청장이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의 확인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유예한 나무의사에게 유예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나무의사 보수교육기관 지정기준(안 제19조의10): 강의실, 교육·전담인력 등 나무의사 보수교육기관의 세부적인 지정기준을 정하고자 함

라. 나무의사 보수교육의 내용·시간·주기 등(안 제19조의11): 나무의사가 나무병원에 종사한 날부터 3년마다 보수교육 20시간 이상을 이수하도록 하고, 보수교육의 내용·비용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함

마. 산불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기간(안 제28조제2항): 「산림보호법」 제34조제1항제3호 및 제57조제3항제3호에 따른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산불조심기간(2.1 ~ 5.15, 11.1 ~ 12.15)으로 구체화함

31.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20. 1. 10.
- 마감일자 : 2020. 2. 19.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가 아님에도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이 개정(법률 제16791호, 2019. 12. 10. 공포, 2020. 3. 11.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2 변경)

- 1) 법 제18조제1항의 과태료 상한액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유사명칭 사용 시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1회 위반 시 250만원, 2회 위반 시 35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500만원으로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조정(별표 2. 개별기준)

3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20. 1. 10.
- 마감일자 : 2020. 2. 19.
-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을 제외하여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사업과 동일 기준 적용으로 시행자의 부담을 완화
- 주요내용
 - 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산정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의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을 제외하는 규정 신설(시행령 제16조의2제6항제5호)

33.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20. 1. 10.
- 마감일자 : 2020. 2. 19.
-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19.7.25)에 따라 타워크레인을 기존 형식신고에서 형식승인 대상으로 전환하고, 불량 부품 사용으로 인한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증대상 부품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기계 제작결함 조사 업무 위탁 기관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운영상 일부 미흡한 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형식신고 대상인 타워크레인을 형식승인 대상으로 전환(안 제11조)
 - 1) 타워크레인의 제작·조립 또는 수입 시 형식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확인검사 절차를 거치도록 함
 - 2) 이를 통해 제작자등으로 하여금 안전성이 확인된 타워크레인을 공급하도록 하고,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 부여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 타워크레인 부품인증 대상 확대(안 제12조의4)
 - 1) 타워크레인의 마스트, 지브, 웨이트 및 기초 앵커를 부품인증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해당 부품 제작자등이 국토교통장관의 인증

을 받도록 함

- 2) 이를 통해 타워크레인에 불량 부품의 사용을 차단하고 정품 및 인증된 부품만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건설기계 제작결합조사 업무 위탁기관 규정(안 제12조의2)

- 1) 건설기계 제작결합조사에 필요한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고 2013년부터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위탁기관으로 명확히 규정함

34.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20. 1. 10. • 마감일자 : 2020. 2. 19.
-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19.7.25)에 따라 소형 면허로 조종가능한 타워크레인의 세부 규격을 구체화하고,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에 대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취득을 위한 조종교육 이수 시 실기 시험을 도입하는 한편, 타워크레인 형식승인 기관을 일원화하고 제작자등의 부품 공급 및 교체주기 공표 의무화 등을 통해 타워크레인의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 정지처분 기준 중 술에 취한 상태에 대한 기준을 「도로교통법」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기준과 동일하게 하는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타워크레인 등의 과부하방지장치를 무단해체 금지대상에 포함(안 제42조의2)
 - 1) 타워크레인 등에 설치되는 과부하방지장치를 무단해체 금지대상에 포함하여 임의로 해체·사용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함
 - 나. 타워크레인 형식승인 기관 일원화(안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47조 및 제54조)
 - 1) 타워크레인 형식승인 기관을 기존 산업안전보건공단을 제외한 검사대행자(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로 일원화하여 관리 강화
- 다. 타워크레인 부품의 공급 및 교체 주기 등 공표 의무화(안 제55조)
 - 1) 타워크레인의 원활한 정비가 가능하도록 제작자등이 타워크레인

- 을 판매한 날부터 8년 이상 관련 부품을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부품의 교체주기 및 가격을 공개하도록 함
- 라. 소형 타워크레인의 규격 구체화(안 제73조, 별표 19의2, 별표 20 및 별표 21)
 - 1) 소형 면허로 조종할 수 있는 규격을 기존 정격하중(3톤 미만) 이외에 지브 길이, 모멘트, 설치 높이 등의 기준을 도입하여 구체화 함
- 마.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조종교육 이수 시 실기시험 도입(안 제74조 및 별표 20)
 - 1)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의 경우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에 실기시험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실기시험에 합격하여야만 교육 수료가 가능하도록 함
- 바. 건설기계 음주 조종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강화(안 별표 22)
 - 1) 건설기계 음주 조종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해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강화(혈중알코올농도 0.05퍼센트 이상 → 0.03퍼센트 이상)

3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 예고일자 : 2020. 1. 10. • 마감일자 : 2020. 2. 21.
- 의무복무자에 대한 국가책임성 강화를 위해 요건 인정 기준을 사회적 환경변화에 맞게 개선하고, 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타법 개정사항 반영 : 병역법 개정에 따라 ‘무관후보생’을 ‘군간부후보생’으로,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병역법에서 삭제된 ‘전환복무된 경비교도’ 삭제 등 반영(별표 1 제8호)
 - 나. 「군인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과의 용어 통일을 위해 ‘급격한’을 ‘현저한’으로 개정 (별표 1 제11호)
 - 다. 의무복무자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사망 자살자에 대한 ‘의학적으로’ 문구 삭제 및 조건 신설 등(별표 1 제14호, 15호, 16호)

3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 예고일자 : 2020. 1. 10.
- 마감일자 : 2020. 2. 21.
- 국방부의 전상(전사) 기준 중 국가보훈처의 전상(전몰) 기준에 없는 규정을 추가하여 요건 불일치 부분을 해소함으로써 정부의 통일된 심사로 국가유공자 전상(전몰) 요건 심사 결과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국방부의 「군인사법 시행령」 전상(전사) 분류 기준에 있는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하거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 제거 작업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신설(별표 1 제1-8호)
 - 나. 적이 설치하지 않은 일반적인 ‘지뢰’ 취급 중 부상은 ‘공상’으로 명확히 규정(별표 1 제2-1호)

37.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 예고일자 : 2020. 1. 13.
- 마감일자 : 2020. 2. 24.
- 산림보호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대상으로 시·도지정문화재를 해제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나무의사 보수교육의 유예사유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명확히 하고,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공단지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가 가능한 산업단지에 포함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발굴행위를 산림보호구역내 가능한 행위로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며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포함하여 ‘날아다니는 불씨’를 산불예방 행위로 제한하고, 그 위반시 과태료 부과규정을 신설함
- 주요내용
 - 가. 매장문화재의 조사·발굴(안 제3조제2항제18호)
 - 1) 산림보호구역내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및 발굴행위를 행위제한에서 허용함
 - 나. 농공단지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대상 포함(안 제6조제2항제1의3호)

1) 농공단지를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제외) 해제 대상에 포함함

다. 시·도지정문화재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대상 포함(안 제6조제7항)

1) 산림보호구역내 위치한 시·도지정문화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문화재 구역과 중첩된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해제 할 수 있도록 함

라. 나무의사 보수교육의 유예 (안 제12조의12)

1) 질병, 부상 등으로 정상적인 나무의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휴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수교육을 유예하도록 하며, 보수교육이 유예된 사람은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

마. 과태료 부과기준(풍등 등 소형열기구) 신설(별표 4)

1) 최근 건조, 강풍 등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발생이 연중화 되고 야간산불과 도시산불이 빈번해지면서 산불 사전예방을 위하여 풍등 등 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포함하여 ‘날아다니는 불씨’를 제한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산불예방을 강화 하고자 함